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도록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위험 관리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국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26년 3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결)된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금융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3. 18. ~ 3.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text{차감금액} = A \times \frac{B}{C}$$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제2장제9절에 제93조의12 및 제93조의1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를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법 제91조의2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 대체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같은 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④ 법 제91조의26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보며,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1 - \frac{(A - B)}{C}$$

A: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득하거나 납입한 가액에서 취득 또는 납입한 시점별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100%,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는 80%, 2026년 8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의 가중치(이하 이 항에서 “복귀가중치”라고 한다)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B: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국외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양도하거나 환매한 가액에 양도 또는 환매한 시점별로 복귀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C: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한 국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양도시점별로 복귀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⑤ 법 제91조의26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의 명칭이 국내시장 복귀계좌일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다만,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1조의26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제2호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경우: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나. 제2호에 따른 납입을 위해 국외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양도대금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국외상장주식 매도수량 ×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시장평균환율
--

⑥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계좌보유자가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종가

2.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⑦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목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좌보유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정일등]까지의 투자비율을 매일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0으로 본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⑧ 법 제91조의26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⑨ 법 제91조의26제4항 단서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천재지변

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⑩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91조의2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에 따른 세액에 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⑫ 계좌보유자가 2025년 12월 23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종목별 수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종목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⑬ 법 제91조의26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 및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⑭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파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

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 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② 법 제91조의2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액은 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별로 계산하되, 그 투자액의 합계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A \times B \times \left(\frac{C}{275\text{일}} \right)$$

A: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정한 외국환 매도금액

B: 제1항제1호에 따른 약정 환율

C: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보유 일수. 이 경우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해당 일수가 27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제2호에 따른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2025년 12월 23일의 해당 국외상장주식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23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종가에 따른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된 2025년 12월 23일의 시장평균환율

④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0조(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법 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 계액으로 한다. $\text{차감금액} = A \times \frac{B}{C}$ A: 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 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 일별 잔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 대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제93조의12(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
<u><신 설></u>	

는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국외상장주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13에서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② 법 제9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
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국외상장주식대체재
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
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
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
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
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2.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거래
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
로 표시하는 지수(해당 지수
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포함한다)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
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장지수증권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의 같은 법 제9조
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④ 법 제91조의2제2항제2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보며, 음수인 경우에는 영
으로 본다)을 말한다.

$$1 - \frac{(A - B)}{C}$$

A: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국외
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취
득하거나 납입한 가액에서 취득 또는 납입한
시점별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
일까지는 100%,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는 80%, 2026년 8월 1일부터 20
26년 12월 31일까지는 50%의 가중치(이하
이 항에서 “복귀가중치”라고 한다)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B: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국외
상장주식 또는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을 양
도하거나 환매한 가액에 양도 또는 환매한
시점별로 복귀가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C: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한 국외상
장주식의 양도가액에 양도시점별로 복귀가
중치를 곱한 금액의 합계액

⑤ 법 제91조의26제3항에 따른 국내시장복귀계좌(이하 이 조에서 “국내시장복귀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의 명칭이 국내시장 복귀계좌일 것

2. 국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내국통화로 환전한 금액으로만 납입이 가능할 것. 다만,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는 국내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법 제91조의26제3항제1호에 따른 납입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가. 제2호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경우: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

나. 제2호에 따른 납입을 위해 국외상장주식 매매계약

을 체결하였으나 양도대금
결제에 완료되지 않은 경
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

해당 매매계약에 따른 국외상장주식 매도수
량 ×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종가(해외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
종가격을 말한다) × 「외국환거래법」에 따
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
된 해당 매매계약에 관한 매매주문 시점의
최근일의 시장평균환율

⑥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잔액이
납입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
여 계좌보유자가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제5
항제2호에 따라 납입한 금액 외
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
다. 이 경우 국내시장복귀계좌
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가
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
의 종가
2.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
목의 재산: 인출 시점 최근일
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
에 따른 기준가격

⑦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
목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라 계좌보유자가 해당 집합투자
증권에 투자한 날부터 역산하여
3개월이 되는 날[집합투자기구
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이
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
은 경우에는 설정일등]까지의
투자비율을 매일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설
정일등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0으로 본다.

1. 법 제91조의26제3항제2호나
목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집합
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2. 제3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
기구: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

액에서 국외상장주식의 가액
이 차지하는 비율

⑧ 법 제91조의2제4항 본문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말한다.

⑨ 법 제91조의2제4항 단서에
서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2. 인출일 전 3개월 이내에 계좌
보유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 천재지변

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 질병의 발생

⑩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내
시장복귀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인출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 신고서를 국내시장복귀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⑪ 법 제91조의26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8항에 따른 세액에 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

⑫ 계좌보유자가 2025년 12월 23일 당시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종목별 수량의 범위 내에서 해당 종목의 국외상장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⑬ 법 제91조의26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 설>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 및 국외 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⑭ 국내시장복귀계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3조의13(환율변동위험회피과생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생상품”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과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이하 이 조에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국외상장주식에 대하여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리 정한 환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환율”이라 한다)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을 장래의 특정 시

점에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일 것

2.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체결한 계약일 것

② 법 제9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투자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투자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액은 각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별로 계산하되, 그 투자액의 합계액은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고 있던 국외상장주식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A \times B \times \left(\frac{C}{275\text{일}} \right)$$

A: 제1항제1호에 따라 약정한 외국환 매도금액

B: 제1항제1호에 따른 약정환율

C: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 보유 일수. 이 경우 보유 일수는 「국세기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며, 해당 일수가 27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75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국외상장
주식의 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
액에 제2호에 따른 환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1. 2025년 12월 23일의 해당 국
외상장주식의 종가(해외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다만, 2025년 12월 23
일 현재의 종가가 없는 경우
에는 직전거래일의 종가에 따
른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재
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으로 산정된 2025년 12월 23
일의 시장평균 환율

④ 법 제91조의2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세대
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은 「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국외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같은 법
제103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서
같은 항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91조의27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외상장주식 가액의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연 락 처	(044) 215 - 4234